

긴급복지지원 부적합자 환수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에 의거,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비용 환수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공고명 : 긴급복지지원 부적합자 환수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4. 7. 25. ~ 2024. 8. 9.
- 공고방법 : 시·군·구 지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공고대상 및 내용
 -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받은 금액을 납부(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주소	환수액	반송사유
납부(반환금액)	산출내역	납부기한	문의
김*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길 *-*, ***호(연희동)	1,178,400원	보관기관 경과
	실거주지: 전라남도 화순군 **읍 **로 ***, ***동 ***호(** **아파트)		
1,178,400원	1,178,400원*1회	2024. 9. 30.	서대문구청 인생케어과 (☎02-330-3832)

- 유의사항
 -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대문구청 인생케어과(☎02-330-3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